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성재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공무원보수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000분의 25 인상·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 2. 29.~ 3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검사의 봉급표(제7조 관련)

(월지급액, 단위: 원)

직명	호봉	봉급액
검찰총장		9,022,800
검찰총장 외의 검사	17	9,009,500
	16	8,992,300
	15	8,482,100
	14	7,974,400
	13	7,519,100
	12	7,134,800
	11	6,949,400
	10	6,731,500
	9	6,367,200
	8	5,933,200
	7	5,559,000
	6	5,207,600
	5	4,868,800
	4	4,527,500
	3	4,197,900
	2	3,868,800
	1	3,433,5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10